「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8년 3월 30일, 평창군수 제출

○ 회부일자 : 2018년 4월 9일 회부

○ 상정일자 : 제235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8년 4월 9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이정균)

가. 제안이유

○「지방세법」개정으로 주택분 재산세를 7월 일시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기준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납세 편익 증진 및 세무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일시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용호)

○본 조례안은「지방세법」개정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를 일시에 부과·징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10만원”을 “20만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